


보 도 자 료			
 환경부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보도일시	2018년 3월 14일 조간 (3. 13.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	환경보건정책관 화학물질정책과	류연기 과장 / 서민아 사무관 044-201- 6770 / 6783
		화학제품관리과	정환진 과장 / 고덕규 사무관 044-201- 6805 / 6806
	배포일시	2018. 3. 12 / 총 20매	

살생물제,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살생물제관리법 제정 및 화평법 개정 공포

- ◇ 가슴기살균제와 같은 모든 살생물제는 유·위해성을 사전에 검증하여 안전한 경우만 시장유통 허용
- ◇ 기업 스스로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확보하여 정부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가슴기살균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 제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이 3월 20일 공포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생물제관리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살생물제 관리)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에 승인을 신청해야 하며, 환경부는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 한편, 법 시행 전('19.1.1)에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산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 살생물제품을 제조·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려는 자는 제품 내 함유물질의 유해성, 제품 사용에 따른 물질의 노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해성을 평가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의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 아울러 제품에 방부 및 향균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예: 살생물처리제품)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했다.

〈 살생물제 정의 및 예시 〉

살생물제	정의	예시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	PHMG, PGH, CMIT/MIT, OIT 등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 기능으로 하는 제품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방부제, 가습기살균제, 오존/이온 발생기 등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이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향균 에어컨필터, 탈취 양말, 보존제가 함유된 제품 등

- (생활화학제품 관리)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을 통합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했다.
 - 그동안 '화평법'에서 규정해 오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살생물제법으로 이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확대했다.
 - 앞으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제품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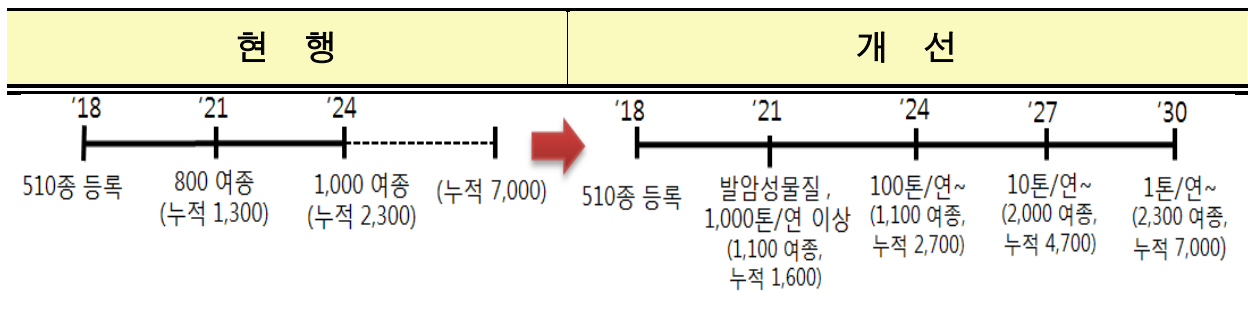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3년마다 검사받아야 하며 검사결과를 포함한 제품 정보 일체를 환경부에 신고해야 한다.

- (사후관리) ‘무독성’, ‘친환경’ 등 제품의 안전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 아울러, 안전기준을 위반한 불법 제품은 즉시 제조·수입 금지 및 회수조치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제재를 가하여 기업이 상시 주의·책임 의무를 다하도록 했다.

<‘화평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내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의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국내에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 가운데 등록 대상물질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현재의 체계에서, 앞으로는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개편했다.
- 특히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천 톤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 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 또한, 정부는 등록예정자를 미리 파악·관리하고, 기업의 원활한 공동 등록을 돕기 위해 기존 화학물질을 국내에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업

체명 등 간단한 정보*를 정부에 제조·수입 전에 신고토록 했다.

- 정부는 사전신고한 기업에게만 유통량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등록대상에 대한 관리를 강화(미신고 시 유예기간 없이 등록)한다.

* 화학물질 등록에서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 등을 위해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함

□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 중점관리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의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 명칭, 용도·함량, 유해성정보, 간단한 노출정보 등을 신고해야 하고, 정부는 신고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 시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다음 제품 내 사용을 제한(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용)·금지할 수 있다.

□ 또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량이라도 위해 우려가 있고 국내 제조·수입량이 많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 개별사업자 기준으로는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일정기준(하위법령에서 규정)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하여 기업이 유해성 자료를 확보·등록하도록 했다.

□ 그 밖에도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하여, 금전적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다.

* 현재는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시행)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은 모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부는 신규 도입되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으로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제도 이행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현장의 애로사항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되고 국민에게 제공됨에 따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BEFORE	AFTER
화학물질 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등록대상 3년마다 지정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통량·유해성에 따라 단계적 등록 (연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살생물제 (물질·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살생물물질 비관리 사전 안전성 검토 없이 시장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살생물물질·살생물제품 사전승인 (안전성 입증시 유통 가능)
생활화학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일적 안전기준 설정 관리대상 한정(가정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기준 주기적 재평가 관리대상 확대(사무실, 다중이용시설)
사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처벌규정 불완전 일회성 단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률 위반 시 제재 강화(과징금 등) 체계적·주기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정보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화학제품 정보제공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화학물질·화학제품 정보 공개 강화 소비자 맞춤 정보시스템 구축

□ 류연기 환경부 화학안전기획단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두 법률이 잘 정착되도록 하여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방지하는데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3. 질의응답.
 4. 전문용어 설명.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환경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화평법) 서민아 사무관(☎ 044-201-6783), 화학제품관리과(살생물제법) 고덕규 사무관(☎ 044-201-680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

붙임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관리, 살생물제 안전관리 등 7장, 60조 및 부칙 5조로 구성

제1장 총 칙	제1조~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적, 정의, 적용범위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원칙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7조~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 및 위해성평가 - 안전기준 고시 및 확인 - 제조·수입금지 등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	제12조~제33조	<p><제1절 살생물물질의 승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물질의 승인신청 및 절차 - 기존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p><제2절 살생물제품의 승인 및 살생물처리제품의 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제품의 승인신청 및 절차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표시기준 <p><제3절 정보의 공개 및 자료보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살생물제 정보공개 및 자료보호 - 자료이용동의서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등	제34조~제4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시·광고의 제한 - 판매금지, 회수명령, 과징금 부과 등 - 새로운 위해성 보고 - 위반사실 공표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1조~제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 교육훈련 및 홍보 - 제품 안전센터의 지정, 정보망 구축
제6장 보 칙	제49조~제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 및 보고 - 출입·검사·수거 - 권리·의무의 승계 등

제7장 벌 칙	제56조~제60조	-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부 칙	제1조~제5조	- 시행일, 경과조치

◆ ①실태조사 → ②위해성평가 → ③관리대상지정 → ④안전표시기준설정 → ⑤안전기준 적합검사 → ⑥제품정보신고 → ⑦표시기준 준수 → ⑧시장 감시를 통한 빈틈없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① 총칙(안 제1조~제6조)

- (목적)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평가, 살생물제의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 안전에 이바지
- (용어정의)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물질·제품·처리제품) 등
- (관리원칙) 사전배려 원칙, 취약계층 배려, 정확한 정보제공
 - ①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사전에 배려
 - ② 어린이, 임신부 등 화학물질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 보호
 - ③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의 정확·신속 제공

②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안 제6조~제7조)

- (실태조사) 환경부장관이 국민건강 또는 환경에 위해가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판매량, 함유성분 등 실태조사 가능토록 규정
- (위해성평가) 실태조사 결과 위해성이 우려되거나, 국·내외에서 제품안전 우려가 제기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해 확인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

③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등(안 제8조~제10조)

- (안전기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해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 설정*
 - * 사용금지 물질 지정, 화학물질 함량제한, 용기·포장기준 설정 등
- (안전확인)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해당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하도록 의무화
- (제품정보 신고) 안전기준 검사결과, 제품정보(성분·함량), 표시사항 등을 환경부에 신고하도록 함

- ◆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증명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사전승인제 도입)

① 살생물물질의 승인 등(안 제12조~제19조)

-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받도록 의무화
 - 살생물물질의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
 -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흡입독성, 잔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사용을 허용
- 법 시행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하도록 하고 독성정보 생산 등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사용을 허용(유예기간동안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생산)
 -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는 물질승인 신청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승인신청을 준비하도록 규정
 - 환경부는 승인유예를 신청한 기존유통 중인 살생물물질 중 사용가능 물질 목록을 고시('19.12.31), 고시안된 물질은 2020.1월부터 퇴출

* 살생물물질 제조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10년 이내 기간 부여(EU의 경우도 2013.9 BPR 제도시행 후 2024년까지 승인유예). 유예기간 중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지 않거나 새로운 위해성이 밝혀지는 경우 제조·수입 금지

※ EU의 경우 유통확인된 964개 살생물질 중 350개 물질만 승인유예 신청, 614개 살생물질은 법 시행 후 즉시 시장에서 퇴출되는 효과 발생

②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안 제20조~제27조)

- 살생물제품(유해생물 제거·억제가 목적인 제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안전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 환경부는 제품 내 함유된 물질, 제품용도, 사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살생물제 제품에 한하여 제품승인을 허용
- 승인받은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하도록 규정
- 기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품은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 중인 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2년까지 판매를 허용
- ※ 유예기간 동안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전관리

③ 살생물처리제품 안전관리(안 제87조)

- 항균필터와 같이 제품의 주된 용도(예: 공기필터) 외에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처리(예: 항균기능 첨가)하는 경우(살생물처리제품),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규정(안전기준)
- 살생물처리제품이 유해생물 제거 등의 기능을 홍보하려는 경우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사실 및 위험표시 의무화(표시기준)

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

① 정보의 공개 및 자료의 보호 등(안 제29조~제33조)

- (공개) 승인받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 제품에 대한 물질·제품 목록, 유해성·위해성 정보, 승인사항 등을 대국민 공개
- (자료보호) 살생물물질 및 제품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승인 신청자료는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

② 표시·광고의 제한(안 제34조)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은 ‘안전한’, ‘친환경’, ‘무독성’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광고를 금지
-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 외에는 모든 제품에서 ‘항균’, ‘세균제거’ 등 유해생물 제거기능이 있음을 알리는 광고 금지

③ 판매금지, 회수조치(안 제35조~제37조)

- 불법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근거 마련
- 제조·수입자가 제품 부작용을 보고하거나 국내·외에서 제품안전 우려가 제기된 경우, 회수권고→ 미이행시 회수명령 등의 규정 마련
- ※ 제품 부작용을 고의로 정부에 알리지 않은 경우 벌칙 부과

④ 과징금 부과, 위반사실 공표 등(안 제38조~제40조까지)

- 불법제품 판매로 인한 부당한 이익의 환수를 위하여 불법제품 판매액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판매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 이내)
- 불법제품 제조·수입, 안전기준 위반제품 판매 등으로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위반사실을 공표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①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안 제41조~제43조)

- (시험·검사기관 지정)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검사, 살생물제 승인 등 전문성 높은 시험자료 생산을 위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 (시험·검사기관 취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시험·검사결과를 다르게 작성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미달할 경우 지정 취소근거 마련

② 교육·홍보, 중소기업 지원 등(안 제44조~제48조)

- (교육·홍보) 제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제품 제조·수입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홍보 교육 근거 마련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제도이행도를 높이기 위하여 승인에 필요한 자료 생산, 기술적 지원, 상호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정보시스템 구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관한 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정보망 구축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안 제10조 등)

- 1) 연간 1톤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현재 환경부장관이 3년마다 등록대상을 지정·고시하는 체계에서, 앞으로는 유해성 및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되도록 등록기한을 설정하는 체계로 변경
- 2)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에만 등록하도록 하고,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나. 등록유예기간 이내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안 제10조제2항)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다만, 현재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고 있는 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19.6.30일까지)에 업체명 등을 사전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 IT로 신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
- * 제조·수입자명,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유해성 분류·표시, 용도(소비자용인지 산업용인지 여부 등)

다.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안 제29조)

현재는 등록된 화학물질의 정보만 물질의 구매자에게 전달토록 하여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정보는 전달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으나, 유해화학물질도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물질의 구매자에게 유해성 정보 등을 전달하도록 개선

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안 제32조)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고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 정보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마. 과징금 신설(안 제17조의 2)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발생하는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매출액의 5%, 단일사업장 보유기업은 2.5%)를 신설*하여, 금전적인 제재를 통해 미등록된 물질이 유통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가해지는 것을 막고자 함.

* 현재는 벌칙만 부과(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바. 기타

- (적용범위 제외) 식약처 관리 대상인 「위생용품관리법」 상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적용범위에서 제외(제3조)
- (등록면제) 현재는 전량수출의 경우 10톤 미만만 등록을 면제하고 있으나, EU, 미국, 일본 등 국제적으로 전량수출은 양에 관계없이 등록면제가 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국내도 양에 관계없이 등록면제
- (허가물질 개선) 현재는 허가를 받도록 지정·고시된 용도만 허가를 받고 사용하고, 그 외의 용도에는 제한없이 사용 가능 → 허가물질로 지정되면 포괄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고 허가를 받은 용도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제25조)
- (선임된 자의 책임강화) 국외 제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있는 경우*, 계약에 따라 선임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벌칙은 선임된 자만 받도록 명확히 규정(제38조)
 - * 국외기업에서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정보를 공유하기 원하지 않는 경우, 국외 제조자(등록비용 부담)가 직접 국내인이나 법인을 선임하여 등록을 할 수 있음
- (벌칙) 고의·과실로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시험기관(5년징역/1억벌금), 유해성심사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수입자(3년/5천) 등에 대한 처벌 신설
- (위해우려제품 관리 이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등 관련 조문 이관

참고

화평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등록대상 물질 관리 (제10조 제1항)	1톤 이상/년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를 등록대상물질로 매 3년마다 지정·고시	1톤 이상/년 유통되는 모든 기존화학물질을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기한을 설정 ※ EU REACH 방식으로 변경하여 '30년까지 모두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 - 기업들이 등록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유통량에 따른 등록일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소량 유통 중소기업에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기존화학 물질 사전 신고제 도입 (제10조 제3항)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없이 제조·수입하고자 할 경우, 물질명 및 제조·수입 예정량 사전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들이 공동등록 대상자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공동등록 유도
소량 신규화학 물질 관리체계 개선 (제10조 제4항)	①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유통량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대상 ②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당시 소량을 이유로 등록면제를 받은 경우에 화명법에서도 계속 등록 면제	① 0.1톤 미만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으로 변경 * 신고 이후 0.1톤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소량이라도 유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등록토록 규정 ②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등록면제를 받은 물질의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성자료 제출의무가 없어 등록 실효성이 낮은 소량 유통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부담 경감 및 유통량이 많은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집중 * EU의 경우에도 1톤 이상만 등록 - 유해법 당시 등록면제 대상물질에 대해서는 신고를 통한 유통현황 파악·관리 가능
미등록자 과징금 처분 신설 (제17조의 2)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에 벌칙 부과 외에도 매출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 (소규모 기업은 매출액 2.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등록, 변경등록 미이행 사업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도 환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제29조)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의 경우에만 유해성 정보를 구매자 등에게 제공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된 물질은 등록여부와는 관계없이 파악된 유해성 정보를 구매자 등에게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해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건강 보호
고위험 물질 함유제품 관리 강화 (제32조)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허가제한물질 등)로 지정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에만 제품내 함유물질 신고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위해성이 높아(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 독성 등) '중점관리물질'로 지정된 물질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에도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해성이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에 대해서도 제품내 사용실태 파악 및 철저한 관리를 통해 국민건강 보호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법률 제정으로 화학제품 관리가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유해성·위해성을 검증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됨
- 또한, ‘화평법’에서 관리하던 위해우려제품 관련 규정을 이 법으로 이관받아 △법적 근거를 제고하고, △관리대상을 현재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며, △실태조사, 자가검사를 강화하는 등 빈틈 없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였음
 - *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신설) → 위해성평가(강화) → 관리대상 지정 → 안전·표시기준 설정(강화) → 자가검사 의무(신설) → 시장 감시체계(강화)
- 한편, 불법제품의 판매금지·회수조치, 과징금 부과 등 법률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방안을 마련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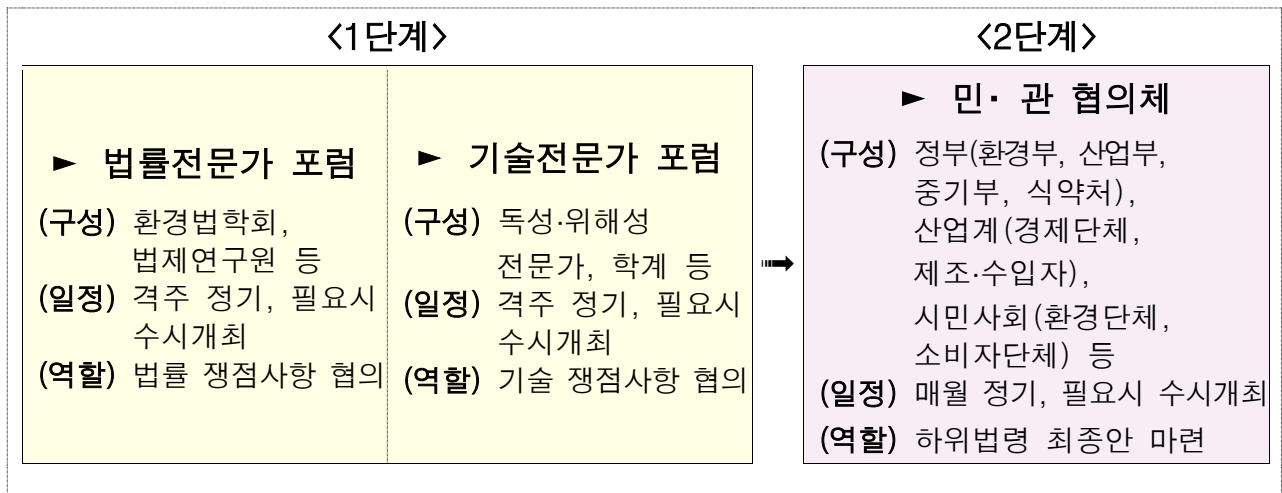
2. 해외에서는 살생물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EU는 ‘98년, 미국은 ’72년부터 살생물제 관리를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여, 시장출시 전 안전성 검증을 의무화하였음
- EU는 물질 승인 후 제품을 승인하는 2단계 접근법을 운영하는 반면, 미국은 물질과 제품을 통합 관리하는 사전 승인제 운영 중
 - * 동 제정안은 EU 규정을 준용, 살생물물질 승인→살생물제품 승인 2단계 접근법 도입

- 또한, EU와 미국 모두 제품 내 함유성분과 위험성을 알리는 표시 기준을 도입하여 소비자의 안전제고 및 알권리를 강화하고 있음

3.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시행준비는 철저히 되고 있는지?

- 조속히 법령안을 마련하여 5월 초 입법예고 예정
- 제도 수립단계부터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를 적극 참여하여 합리적 제도설계가 되도록 추진
하위법령 제정 추진체계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관련 >

1. 화평법 개정으로 화학물질 관리가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

- “정보없이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는 원칙에 따라 기업의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확보와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으로,
- 조속한 유해성 정보 확보·관리를 위해 현재 등록대상을 매 3년마다 지정·고시하는 체계를 개편하여,
- 연간 1톤이상 모든 기존화학물질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

으로 2030년까지 모두 등록토록 하려는 것임

- 그 밖에도 화학물질 및 제품에 의한 국민건강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사항이 포함
- ①암을 유발하거나 폐, 간 등 장기에 손상을 주는 등 인체 위해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되는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하고 일정량이상 함유한 제품은 신고, ②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강화 등

2. 법률 개정안의 등록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등록일정은?

- 법률 개정안(제10조)에 기존화학물질의 구체적인 등록기간이 규정
- 1톤 이상 CMR 물질(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과 1천톤 이상 화학물질은 2021년까지, 100톤~1,000톤 미만은 2024년까지, 1톤~100톤 미만은 2030년까지 등록하도록 법률에 규정
- 10~100톤 미만은 2027년까지 등록하도록 시행령에서 세분화하여 규정할 예정임
- 국민 건강상에 위해우려가 높은 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천톤 이상의 물질은 2021년까지 등록완료

현 행	개 선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 가운데 등록대상을 3년마다 지정·고시	1톤이상 기존화학물질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법령에 명시

3. 기존화학물질은 등록 전에 화학물질 명칭, 제조·수입예정량 등을 신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전신고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목적은?

- 화학물질의 등록은 공동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등록을 위해서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유해성 시험자료를 공동으로 확보해야 하는데,
* 중복적인 동물실험 방지(동물복지) 및 비용절감 등 목적
- 현재에는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어 등록에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기업은 화학물질의 명칭, 제조·수입 예정량 등 간단한 정보를 신고토록 하여 기업들의 원활한 공동등록을 유도하고 정부도 등록대상을 미리 파악하여 관리하고자 한 것임

4.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 관계부처 합동(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등)으로 중소기업 등 산업계 등록부담을 저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고('17.9.28),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운영('18.하)하여 적극 이행할 예정
- * 「화평법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 방안」 ('17.9.28, 경제관계장관회의)
- ** 현재는 '14.4월부터 환경부 단독으로 운영 중 → 산업부, 중기부 등 공동 운영체제로 개편
- 이에 따라 위해우려가 낮은 물질은 등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최소화하고, 국가 기반산업 성장에 필요하고 중소기업이 주로 제조·사용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지원을 강화할 예정임

참고

중소기업 등 산업계 이행 지원방안

① 등록제도의 합리적 정비(시행령 개정사항, 환경부)

- 기존화학물질(7천여종) 등록을 이원화하여 유해성이 있다고 분류되지 않은 물질은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유해성을 먼저 확인*
- * 제출서류 검토 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추가 시험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사각지대 없이 화학물질 관리 추진

② 등록비용 저감(관계부처 합동)

- (패키지 지원) 컨설팅, 시험자료 생산, 등록서류 작성 등 화학물질 등록 전과정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사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 (금융지원) 등록부담이 큰 다품종 소량 화학물질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지원(긴급경영안전자금 1,250억 활용) 및 보증한도 확대 등 금융지원(중기부)
- (기존자료 확인·제공) 전체 등록대상물질 7천여종에 대해 국내외 기존 자료의 존재여부, 출처 등을 조사(Data gap분석)하여 기업들에게 제공
- (신규자료 생산·제공) 중소기업에서 주로 취급하는 물질 가운데 기존자료가 없는 경우, 정부가 직접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및 저가 제공

③ 등록 인프라 확충 및 교육·홍보 강화(관계부처 합동)

- (정부에서 시험기관 설치) 민간에서 설치하기에는 경제성이 낮은 흡입독성 등 시험기관은 정부에서 직접 설치
- (민간 시험기관 지원) 민간 시험기관에게 무상기술이전 및 인증을 지원하고(산업부), 중소기업에게 민간 시험장비를 저렴하게 활용하도록 지원(중기부)
- (교육·홍보) 중기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 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대상 집중 홍보, 현장상담,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 추진

붙임 4

전문용어 설명

□ 살생물제 관련

○ 살생물물질(유해생물의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등의 효과· 효능을 가진 물질)

물질명	유해성
PHMG (구조식 : $(C_7H_{15}N_3)_n \cdot xH_3O_4P$)	- (용도) 항균제 - (인체독성) 급성경구독성, 심한 눈 손상 - (환경독성) 어류· 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
OIT (구조식 : $C_{11}N_{19}NOS$)	- (용도) 방부제, 방균제 - (인체독성) 심한 눈 손상, 피부 과민성 등 - (환경독성) 어류· 물벼룩 등 수생생물에 급성독성 ↑

○ 살생물제품(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제품)

제품	기능	예시
소독제 (살균제 등)	-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사용되는 제품	- 주방·욕실 소독제 - 가습기살균제
구제제 (살충제 등)	- 해충 따위를 몰아내거나 없애는 데 쓰이는 제품	- 해충 살충제 - 해충 유인제, 기피제 - 살서제(취약)
보존제 (방부제 등)	- 세균류의 성장을 억제하거나 제거하여 본제품의 기능을 장기간 보존하도록 첨가하는 제품	- 목재용 방부제, 화학제품 보존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제품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제품	기능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균 기능성 의류 - 항균 필터 - 방부처리된 목제 - 보존제가 들어간 화학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의 항균기능 강화, 보존,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살생물제품(보존제)를 첨가한 제품
---	---

□ 화평법 관련

-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로 급성경구독성, 급성흡입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반복노출독성 등 지정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832종 지정)
- (허가물질)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현재까지 지정된 물질 없음)
-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12종 지정)
-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함(60종 지정)
- (유해성심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제출한 화학물질의 용도,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자료 등으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독성 등이 있는지 심사하는 것을 말함, 유해성심사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유독물질로 지정·고시